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소유권에 관한 검토회』 보고

일본 통신정책국 기술정책과 표준화추진실

역자 : 전현신 / TTA 표준 3부

1. 머리말

우정성은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소유권의 처리 및 표준화 기관의 역할, De facto 표준과 지적소유권 및 서구의 지적소유권 전략 등에 입각하여 일본의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소유권의 실태를 검토하고, 세계적 규모의 정보통신기반(GII)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조활동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94년 10월부터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소유권에 관한 검토회」(좌장:名和小太郎新潟대학 법학부 교수)를 설치하고 검토를 해왔다.

올해 8월 28일에 개최된 최종회합에서 이 보고서를 취합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정성에서는 이후에 본 보고서의 제언에 입각하여 ITU 등 국제기관이나 국제회합으로의 제안, 호소, 국내표준화작업으로의 반영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다.

2.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소유권을 둘러싼 환경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와 사용자 필요에 따른 다양화 등에 의해 표준의 내용도 상세하고 복잡해지고 있고, 표준을 구성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이 하나의 표준속에 많이 존재하게 되며(권리보유자가 많아지는 것), 정보통신

분야와 타 분야가 융합되어 그 융합 영역에서의 표준화가 중요해지고, 권리보유기업이 기업전략의 일환으로서 지적소유권의 처리를 고려하게 되는 등, 표준을 구성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 등의 지적소유권 문제 가 시화되고 있다.

또, 표준화 대상이 보다 고도의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분야로 넓어져감에 따라 표준화 기관에서 활동대상의 확대 및 작업의 급속화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뒤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기술개발로 표준화에 관심을 갖는 기업에 의한 그룹(포럼) 및 일부 기업에 의해 독자적인 기술사양을 만드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표준화기관에서 정해진 공적인 표준은 없지만 널리 보급되어 공적인 표준에 준한 대우를 받게되는 소위 「De facto 표준」으로 된것도 있다.

3. 표준화기관에서의 지적소유권의 처리

많은 표준화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지적소유권의 처리 규칙을 정해놓고 있는데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준화기관에서 작성된 표준은 상호접속성·상호운용성의 확보가 필요불가결하고 공공성을 높히며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은 꼭 필요하다.

- ① 권리보유자가 그 표준의 실시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어떤 제약, 로얄티도 없음)
- ② 권리보유자가 그 표준의 실시에 관해 배타적권리는 주장하지 않고, 절충에 의해 적절한 조건으로 또한 차별하지 않고 공급할 뜻이 있음
- ③ 권리보유자가 위의 어떤 뜻도 없을 때에는 표준(권고)이 작성되지 않음.

4. 포룸에서의 지적소유권의 처리

De facto 표준없이 장래 De facto 표준이 될 가능성은 가진 기술사양을 만들고 있는 포룸은 시장주도가 아니라 기술주도형으로 기술사양을 만들고 있다. 활동내용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기술영역에서 제정되고 있다. 또, 합의형성 조직은 단일계층인 것이 많다. 때문에 합의형성 시간이 짧고 사용자 필요에 적합한 기능 실현을 적시에 최고로 적절한 유일한 기술을 운용할 수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지적소유권의 처리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은 것도 많다.

5. 이후의 대응

표준화에 관련된 지적수요권 문제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9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1) 표준화 기관에서 지적소유권의 처리의 개선

- IPR Policy의 명확화·강화

표준화기관에서 지적소유권 처리 규칙을 명확히 하고 위상정립의 강화가 중요하며 ITU에서 점차 제안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 저작권의 명확화

OS와 소프트웨어간의 인터페이스사양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길 희망한다.

(2) De facto 표준에서의 지적소유권의 처리 개선

- De facto 표준의 공적표준으로의 채용

민간의 포럼사양 등을 공적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채용 조건으로

서 해당사양이 지적소유권의 처리에 관해서 무차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방하는 것 등이 고려된다.

- De facto 표준의 지적소유권 처리 식별

De facto 표준에 관련된 지적소유권의 처리에 관해서 표준화기관에 의해 그 처리가 적절한 것을 식별하고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당하다.

- De facto 표준 관련 지적소유권에 관한 권리의 남용 방지

De facto 표준 관련 지적소유권의 사용허락 교섭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교섭에 의한 것이 기본인데, 시장에서의 독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리의 남용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

(3) 합리적인 지적소유권 하락환경의 정비

- 정보교환·조사의 추진

De facto 표준을 포함해서 적절한 지적소유권 처리의 추진을 위하여 표준화 관련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분쟁에 대한 대응

실제로 지적소유권의 처리에 관한 분쟁이 생길 때 처리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기관내에 지적소유권을 위한 대응창구의 설치나 외부 중재기관의 활용등이 유효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 권리보유자 그룹에 의한 일괄허락처리의 촉진

지적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에 의한 일괄허락처리(Patent Pool)를 촉진해갈 필요가 있다. 이 계획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참가자간에 합리적인 지적소유권의 처리가 촉진되고 또, 관련된 지적소유권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창구의 일원화에 의해 교섭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 국제적 조화의 촉진

표준화작업은 한나라에서만 그치지 않고 국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권고의 공공재적 측면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원활한 짜임새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국이 국제권고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지적소유권 관련 법령의 운용이나 개정에 협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ITU, ISO, IEC, WIPO 등에서의 제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